

우수수입업소 제도 안내



식품의약품안전처

우수수입업소 개요



“우수수입업소”란

- ✓ 국민이 수입식품등을 안심하고 소비할 수 있도록 수출국 현지의 생산단계부터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사전 안전관리를 위해 도입된 것으로
- ✓ 수입하는 식품등이 생산되는 해외제조업소 또는 해외작업장의 위생관리 상태를 점검하고 직접 관리하는 영업자(수입식품등 수입판매업)를 의미함



관련 규정

- ✓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7조(우수수입업소 등록 등)
- ✓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제4조(우수수입업소 등록 등)
- ✓ 「우수수입업소 등록 및 관리 기준」(고시 제2024-75호, '24.11.26.)
- ✓ 「해외제조업소 및 해외작업장 현지실사 방법 및 기준」(고시 제2023-8호, '23.2.6.)



등록 품목



식품 및
식품첨가물



기구 및
용기·포장



건강기능
식품



축산물
가공품

우수수입업소 등록 및 관리절차



등록 절차

등록절차



위생점검

「해외제조업소 및 해외작업장 현지실사 방법 및 기준」의 점검표 사용*
식품류(75항목), 기구 또는 용기·포장류(31항목), 축산물가공장(88항목)

점검주체

수입자 직접 점검 또는 식약처가 지정한 '해외식품 위생평가기관*' 의뢰

제출자료

등록신청서(별지 제2호서식) 및 구비서류*

* 제품명, 원료명 및 제조·가공의 방법, 해외제조업소 위생관리 상태 점검결과보고서,
해외제조업소 수출국 법령에 따른 허가등록 증명하는 서류



등록 후 관리

준수사항

매년 1회 이상 해당 해외제조업소의 위생관리 상태 점검* 후 다음 연도 1월말
까지 결과보고서와 그 증명서류 등을 제출

* 해외식품 위생평가기관에 의뢰 가능

점검주기

우수수입업소 등록 다음 해부터 매년 1회 이상 위생관리 상태 점검(신규
등록한 연도는 제외)

유효기간

등록한 날부터 3년

연장신청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60일 전까지 연장 신청서(별지 제2호서식) 및
구비서류* 제출

* 제품정보, 위생관리 상태 결과보고서, 해외제조업소 수출국 법령에 따른 허가·등록
증명하는 서류

변경신고

등록정보의 변경* 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변경등록신청서(별지 제5호서식) 제출

* 영업자의 성명, 우수수입업소 명칭 및 소재지, 해당 해외제조업소의 명칭 및 소재지,
등록된 수입식품등의 제품명, 원료 및 제조·가공 공정

우수수입업소 우대혜택



통관단계

- ✔ 등록 제품 무작위표본검사 대상 제외
- ✔ 계획수입 신속통관 제도 이용 가능

계획수입 신속통관 제도

- 연간 계획수입을 신청·승인 받으면 수입신고 즉시 '수입신고 확인증' 자동발급(서류 검사, 현장검사, 무작위표본검사 면제)
- 신청대상 : ①우수수입업소 등록자가 ②최근 3년간(신청 월 기준) 연평균 5회 이상 수입신고 (매년 수입실적 有)하고, ③부적합이 없는 제품(1년간 계획수입 신청)



그 밖의 혜택

- ✔ 일정 요건*을 갖춘 우수수입업소의 행정처분 감경('25.7 시행)
 - * ① 연1회 이상 해외제조업소(작업장)의 위생관리 상태 점검 실시
 - ② 최근 3년간 행정처분 및 「수입식품법」 제21조 및 제25조에 따른 부적합 이력이 없는 경우
- ✔ 등록 정보(업체, 제품) 식약처 홈페이지 게재
- ✔ 제품에 우수수입업소 도안 표시
- ✔ 주문자상표부착수입식품등 수입·판매 영업자가 실시해야 하는 주기별* 해외제조업소 위생평가 생략 가능
 - * 1년: 영아용(성장용) 조제식, 영·유아용 이유식, 3년: 기구 및 용기·포장, 2년: 그 외 식품 등



우수수입업소 도안

우수수입업소 신속 등록 요건



아래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식약처 현지실사 생략하고 등록

- ✓ 우수수입업소 등록을 신청한 날로부터 과거 1년 이내에 해당 해외제조업소가 현지실사를 받고 적합한 경우
- ✓ 다른 우수수입업소가 이미 등록한 해외제조업소를 다시 등록하고자 하는 경우
* 등록한 수입식품등과 유형이 같고, 새로운 제조·가공시설이 필요하지 않다고 인정된 경우
- ✓ 우수수입업소 등록 신청 시 해외식품 위생평가기관 점검 결과보고서를 제출한 경우('25.12 예정)

준수사항(위생점검) 간소화 요건

- ✓ 동일한 해외제조업소를 등록한 우수수입업소가 2개소 이상인 경우 공동으로 점검하여 유지·관리 가능
- ✓ 해당 해외제조업소가 우수수입업소의 위생점검 기간 내에 현지실사를 받고 적합하다고 판정된 경우 위생점검을 실시한 것으로 인정

준수사항(위생점검) 유예 요건

- ✓ 해외제조업소가 생산을 1년 이상 중단할 경우
- ✓ 해외제조업소의 소재지가 「여행경보제도 운영지침」에 따른 3단계(적색경보), 4단계(흑색경보) 또는 특별여행주의보가 발령된 지역이거나, 해외제조업소로 가기 위해 반드시 거쳐야 할 경로에 이 지역이 포함된 경우
⇒ 준수사항 유예에 따라 우대조치 중단, 향후 위생점검 시 재개

우수수입업소 등록 정보 확인



식품안전나라

✓ 식품안전 → 수입식품 → 우수수입업소 (매월 1회 공개)

순위	업체명	소재지	점수
120	우수수입업소 등록 현황(2025.4)	경기수원	18
119	우수수입업소 등록 현황(2025.3)	경기수원	65
118	우수수입업소 등록 현황(2025.4)	경기수원	54
117	우수수입업소 등록 현황(2025.3)	경기수원	92
116	우수수입업소 등록 현황(2025.4)	경기수원	65
115	우수수입업소 등록 현황(2025.3)	경기수원	79
114	우수수입업소 등록 현황(2025.3)	경기수원	71
113	우수수입업소 등록 현황(2025.3)	경기수원	87
112	우수수입업소 등록 현황(2025.4)	경기수원	89

<http://www.foodsafetykorea.go.kr>



수입식품정보마루

✓ 안전정보 → 우수수입업소 (매월 1회 공개)



<http://impfood.mfds.go.kr>

우수수입업소 등록 FAQ

해외제조업소 점검은 어떻게 하나요?

- ✔ 식약처 해외제조업소 및 해외작업장 현지실사 방법 및 기준에 따라 평가항목별로 점검하여 판정하여야 합니다.

우수수입업소 등록 신청서는 어떻게 제출하나요?

- ✔ 수입식품정보마루 누리집(<http://impfood.mfds.go.kr>) > 전자민원에서 신청이 가능하며, 원활한 등록절차 진행을 위해 우수수입업소 담당자와 사전 상담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수수입업소 등록 시 모든 수입검사가 면제되나요?

- ✔ 등록 제품은 무작위표본검사 대상에서 제외되며, 계획수입 신속통관제도 신청 제품은 서류, 현장검사까지 면제됩니다. 정밀검사는 면제되지 않습니다.

우수수입업소 신청 불가한 품목이 있나요?

- ✔ 농·임·수산물, 축산물 중 식육·원유·식용란 및 식육을 절단하여 포장한 포장육, 자사제품 제조용 원료는 대상 품목에서 제외됩니다.

우수수입업소 위생관리상태 점검 주기는 어떤가요?

- ✔ 등록 다음 해부터 매년(1월~12월) 점검 후 다음연도 1월말까지 그 결과를 보고해야 합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수입식품안전정책국 현지실사과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
TEL. 043-719-6213, 6204 | EMAIL. mfdsoip@korea.kr